

공학인을 위한 특허제도의 이해

김형근†

Hyeong Keun Kim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로 소유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을 일컫는다. 그 중 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특허제도는 특히 공학인에게 중요하다.

특허제도는 기본적으로 권리주의, 심사주의, 선출원주의, 출원공개주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주의는 발명을 한 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심사주의는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심사관이 선행기술과의 대비 등을 통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선출원주의란 제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공개주의란 특허출원의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한 후 발명의 내용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여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거나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주의란 심사관의 특허 결정 후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원인이 출원을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심사관이 특허요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특허요건으로는 대표적으로 명세서 기재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 우선 신규성은 공지 공용 기술이 아닐 것, 즉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종래의 선행기술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선행기술이란 출원전 공지 공언히 실시된 발명, 출원전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학인들이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출원전 그 내용을 학회나 논문집에 먼저 발표하고 나서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

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즉 특허출원전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를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에서 제외하여 그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학인은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그 결과물을 학회 등에서 발표하고 반드시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만 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는 공서양속을 해할 수 있는 발명이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 이에 속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발명자이다. 즉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을 완성한 시점에 원시적으로 갖게 된다. 그러나 발명자와 회사 또는 연구소의 직무발명계약 등에 의하여 그 권리를 회사 등에 귀속시킬 수도 있다.

특허출원서에는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명세서는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구분된다.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실제적인 내용을 그 실시예, 도면과 함께 자세히 기재한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로 등록된 이후에 그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한다.

공학인들이 힘들게 발명하여 출원한 이후에 진정한 권리로서 인정받고자 한다면 특허제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 E-mail : hkk2580@kipo.go.kr
Tel : 042-481-8245, 특허청